

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도시개발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간2017.05 ~ 2018.12		
사업내용	○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 ○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		
사업위치	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60번지 일대		
총사업비	총 500,000천원	(국비)	(사비)50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사업비 (당해년도)	250,000천원	(국비)	(사비)25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계획국	도시관리과	임창수 2133-8370	안수기 2133-8396	임원선 2133-8398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(x-)
계	(x-) 250,000	(x-) 250,000	(x-) 0	(x-) 0
시설비	(x-) 250,000	(x-) 250,000	(x-) 0	(x-) 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시설비	○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	=	250,000천원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
	250,000,000원

연차별 투자계획(투자사업의 경우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기투자 (~2016)	2017	2018	2019 이후	비고
계	(x-) 500	(x-)	(x-) 250	(x-) 250	(x-)	
용역시행	(x-) 500	(x-)	(x-) 250	(x-) 250	(x-)	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

사업근거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2조, 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

사업내용

-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, 도곡동, 일원동 일대
- 면 적 : 3,937,263 m^2
- 사업기간 : 2017.5.17. ~ 2018.12.31
- 사업내용

- 추진방향

- 관련법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 등 여건변화와 개발 트렌드를 반영한 기반시설 계획 조정
-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 과정에 드러난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등을 신속히 개선 추진

- 주요 내용

- 법률상 불부합한 기반시설의 지침 변경
- 현황여건상 불합리한 기반시설(녹지 등)조정
-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
- 총사업비 : 500,000천원(2017년 250백만원, 2018년 250백만원)

사업계획(투자사업의 경우)

-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, 도곡동, 일원동 일대(3,937,263 m^2)

추진경위

- 2011.06 :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지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
- 2017.05 :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(부분) 용역계약
- 2017.07 :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(부분) 용역 착수보고

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50,000	
교통용역계약	2018.01~2018.02	123,000	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
교통용역시행	2018.01~2018.09		
지구단위용역시행	2018.01~2018.09	127,000	
용역준공	2018.09~2018.09		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
2016년도	
2017년도	○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(안) 마련, 항목별 지구단위계획(안) 검토

향후 기대효과

-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황여건 및 관계법령에 모두 부합하는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대안 및 실행방안 제시